

규 칙

제 1 장 목 적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입 회

제2조(입회신청절차) 정회원,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 프로필 등록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조(회원자격의 자동변경)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각각 정회원이 된다.

제 3 장 회 비

제5조(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) ① 정회원, 학생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- 정 회원 입 회 금 10,000원
회비(년액) 50,000원
- 학생회원 입 회 금 5,000원
회비(년액) 20,000원
- 논문구독비 : 40,000원(선택 신청후 추가 납부)
- 중신회원 : 년회비 15년분

② 회비는 매년 만료기간(가입월 기준 1년)내에 납입하고, 논문 구독비는 별도 납부한다.

일반회비는 별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, 특별회비 및 학술대회 참가비, 논문게재료 등은 카드결제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

③ 중신회원은 정회원중에서 1년회비의 15년분을 일시불할 시에는 차후 중신토록 회비를 면제하되, 논문구독비는 별도로 납부한다.

④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) ①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시 회지의 배포

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.

제7조(기납금품의 불반환)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4 장 회 무

제8조(이사의 직무분장) 회장,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.

- 총 무 이 사 : 회원관리, 기획, 인사, 문서, 섭외, 일반사무
- 재 무 이 사 : 예산, 결산, 금전출납, 재산관리
- 편 집 이 사 : 회지 및 기타 제간행물의 편집 발행, 도서관리
- 조 사 이 사 : 조사 및 연구, 표준 및 규격의 제정
- 사 업 이 사 : 연구회관리, 기술교육, 워크숍, 좌담회, 견학회

·산학협동이사 : 산학협동 신기술전시회, 산학공동연구 및 개발

·학 술 이 사 : 학술대회, 학술행사

·국 제 이 사 : 국제컨퍼런스, 학술행사

·대외협력이사 : 산학연 대외협력

제9조(사무직원) 회장은 회무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.

제 5 장 평 의 원 선 출

제10조(평의원의 선출절차) 평의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직접선출에 의한 평의원
1. 이사회에서 신입평의원 후보자 160인 이내를 선정하여 정회원에게 알린다.
2. 정회원은 그중 80인 이내를 선정하여 소정 투표용지에 기입 본회 사무소에 도착되도록 한다.
3. 전향의 투표지를 개표하여 그 중 득표순위에

따라 80인이내를 선출한다.

4. 1. 2. 3호를 따르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전자투표로 시행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평의원

1. 명예회장, 자문위원은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원의 평의원으로 추대한다.

2. 지회장은 재임기간 중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의원으로 된다.

3. 당연직 평의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.

③ 간접선출에 의한 평의원

1. 지회별 쿼터제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회장이 추천한다(단, 회원은 당해년도 연회비 납부자 및 종신회원에 한한다).

- 회원수 30인 미만 : 1인(지회장 외)

- 회원수 30인 이상 60인 미만 : 2인(지회장 외)

- 회원수 60인 이상 : 3인(지회장 외)

2.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를 추가로 신입회장이 추천한다.

3. 전 1, 2항에서 추천된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평의원이 된다.

제 6 장 위원회 및 연구회

제11조(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)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제 7 장 지 회

제12조(지회설치요건) ① 지회는 시·도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지역에는 해당지역을 관할구역으로하여 별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회설치에 필요한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.

·시·도단위 : 정회원 30인이상

·특별지역 : 정회원 30인이상

제13조(지회임원의 정원) 지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.

·지 회 장 1인

·지회이사 약간명

·지회감사 2인

제14조(지회임원의 임기) 지회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임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정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지회규약의 제정) 지회는 정관 및 본규칙 취지에 준하여 지회규약을 만들어야 하며,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6조(경비의 보조) 지회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7조(예산·결산보고, 보조금 신청) 지회는 매년도 예산,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.

보조금은 총회 개최시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직장간사) 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의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직장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 8 장 간행물 발간

제19조(간행물출판) 본회는 학회지 및 논문지를 해당발간월 말일에 각각 발간하며, 도서는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.

제20조(회지배포) 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국내외학회,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지 구독과 행사 교재 및 자료 등은 유료로 할 수 있다.

제 9 장 포상 및 장려

제21조(포상의 대상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발명 또는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공로가 있는 자

2. 본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

제22조(포상의 종류) 본회의 포상은 다음 4종으로 한다.

1. 공로상
2. 학술상
3. 논문상
4. 기술상
5. 특별상
6. 학술대회 발표상
7. 우수졸업생 표창

제23조(포상기준) 포상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
제24조(연구비 보조) ① 조명 및 전기설비의 학습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조명 및 전기설비 관련단체에 대하여 출연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25조(장학금 지급) 본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6조(포상실시) 본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 이를 시행한다.

제27조(규정류의 제개정) 규정 및 기준 등의 제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한다.

제28조(시행일자)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평의원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9조(경과조치) 2011년 9월 7일 선출된 직선평의원수는 예외로 한다.

제 10 장 부 칙

1. 이 규칙은 1987년 4월 8일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규칙은 2011년 2월 10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3.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4.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